

June 12, 2024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I.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와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종전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상으로는 필수품목¹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 1. 2.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2024. 7. 3.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 7. 3.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2024. 7. 3.)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해당 가맹계약에 대해서는 2024. 7. 3.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4. 6. 4.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12. 5.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 12. 5.부터는 (i)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ii)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4. 12. 5.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 2024. 12. 5.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¹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p>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u>분쟁</u>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p> <p>8. ~ 9. (생략)</p>	<p>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 6. (중전과 같음)</p> <p>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u>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u>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p> <p>8. ~ 9. (중전과 같음)</p>
<p>[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p> <p>2. 구속조건부 거래</p> <p>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가. (생략)</p> <p>나. 거래상대방의 구속</p> <p>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p> <p>(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p> <p>(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u>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u></p>	<p>[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p> <p>2. 구속조건부 거래</p> <p>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가. (생략)</p> <p>나. 거래상대방의 구속</p> <p>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중전과 같음)</p> <p>(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u>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u></p>

	<p><u>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u></p> <p><u>(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u></p>
--	---

II. 시사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하고, 기존 가맹계약서도 제때 수정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02.3404.0230

E sanghoon.shin@bkl.co.kr

최휘진

변호사

T 02.3404.6406

E hwijin.choi@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